

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5-50호

조기채취업수당 부지급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

조기채취업수당 부지급 결정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5. 4. 9.

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



- 건 명: 조기채취업수당 부지급 결정 통지
- 근 거: 고용보험법 제64조,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
-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송달불능 사유	주소
윤○동	1961. 4. 6.	실업급여(조기채취업수당) 부지급 결정 통지서	조기채취업수당 부지급(24.1.1. 이후 수급자격 신청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으로 재취업한 경우에 해당) 결정 통지서 및 해당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	폐문 부재	부산광역시 금정구 서곡로20번길 8-1

4. 공고기간: 2025. 4. 9. ~ 2025. 4. 23.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고용센터 실업급여팀 김승우(Tel. 051-760-714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